

부천원종지구 B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기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내 B2블록 591세대

■ 공급대상: B2블록 591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세대 (전용면적 46㎡ 1세대, 55㎡ 9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2023.08.04)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일반 당첨자로 관리)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고일(2024.06.18) 기준 부천원종 B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부천원종 B2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3.08.04)의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약세대의 선택품목으로 시공되며, 공간옵션,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설치 및 변경,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mark>중도금(1차) 납부기일은 2024.10.26</mark>일이며, 주택가격 및 납부조건은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3.08.04)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공분양 잔여세대 10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부천원종지구 B2블록 **591세대 중 금회 공급하는 39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9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부천원종 B2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18(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0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일(2024.06.18) 기준 부천원종 B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부천원종 B2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3.08.04)의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약세대의 선택품목으로 시공되며, 공간읍선,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설치 및 변경,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건본주택)은 현재 운영 종료되어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www.bcb2.co.kr)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펌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경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부천원종 B2블록은 전 세대 신혼화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단지입니다. (단, 금회공급 46형 세대는 모기지 선택가입 대상임)
- 청약신청시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46A, 55A 개별선택 불가하며 46형, 55형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천원종 B2블록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 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공 고 | 전 수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
|--------------|------------------------------|-------------------------|--------------------------------------|---|--------------------------------------|--|--|
| <u> </u> | 접 수 | 경심사결교 | 경험자 지규입구 | 전자계약 | 현장계약 | | |
| '24.06.18(화) | '24.6.28(금) (10:00~17:00) | '24.07.04(목) (16:00) | '24.07.18(목) (10:00~16:00) | '24.08.22(목) (10:00~16:00) | '24.08.23(금) (10:00~16:00) | | |
| LH 청 | 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 | 바일앱 | LH 원종B2블록 현장접수처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643)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LH 원종B2블록 현장접수처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643) | | |

- %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LH 부천원종 B2블록 현장접수처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주민 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
|-----------|---|------------------------------|
| 신 혼 부 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
| 한 부 모 가 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화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 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회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 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 10년** 적용되고,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별표3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일(~로부터) | 기간 | 관련 법령 |
|-------|-------------------|-----|---------------------------------|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24.7.4) | 10년 |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23.1.26) | 3년 |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 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4.08.22(목)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 부천원종 B2블록 현장접수처(인천광역시 서구봉수대로643, 변동될 수 있음)에 'Ⅶ.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추첨을 통해 배정된 동·호로만 계약체결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 금회 공급하는 부천원종 B2블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금회공급 46형 세대는 선택가입 대상임)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 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HUG 콜센터**(1566-9009)
- 상세자료: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 대출기간 | 대출 70% 실행시 | | 대출 60% 실행시 | | 대 | 대출 50% 실행시 | | 대출 40% 실행시 | | | 대출 30% 실행시 | | | | |
|------|------------|-----|------------|-----|-----|------------|-----|------------|-----|-----|------------|-----|-----|-----|-----|
| (년)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 1~9 | 50% | 40% | 30% | 45% | 35% | 25% | 40% | 30% | 20% | 35% | 25% | 15% | 30% | 20% | 10% |
| 14 | 40% | 30% | 20% | 35% | 25% | 15% | 30% | 20% | 10% | 25% | 15% | 10% | 20% | 15% | 10% |
| 19 | 30% | 20% | 10% | 25%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 24이상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됨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 부천원종 B2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단지로, 주택공급 가격의 최소 30%이상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모기지 의무가입[55형] 세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
- ※ 단, 금회공급 46형 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선택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공급 46형 세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용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당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공급 46형 세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미가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괴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당첨사 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천원종 B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3.08.04)의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단위 : 천원]

Ⅰ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부처워종 B2블록 591세대 중 신호희망타우(공공분양) 13~15층 8개동 전용면적 60m 이하 10세대

2. 공급대상

| | | | | | 세대 | 내당 주택면격 | 4(m²) | | 공유 | ā | 공급 세대수 | (호) | | | |
|----|----------------------|-----|-----------|---------|---------|---------|---------|-----------|------------|-----|--------|-----|----------|-----------|------------|
| 불록 | 주택형 | 타입 | 타입 발코니 유형 | 공급 | 면적 | 그 밖의 | 공용면적 | 계약 | 대지 | | 금희공급 |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입주예정 시기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면적 (계) | 면적 (m²) | 합계 | 공공분양 | | | | |
| | 합계 | | | | | | | | | | 10 | 197 | | | |
| | 46형 (046.00000) | 46A | 확장 | 46.9700 | 21.0344 | 8.9132 | 43.3169 | 120.2345 | 36.5549 | 120 | 1 | 40 | 15 | 0 | |
| B2 | | 55A | 확장 | 55.9300 | 25.0470 | 10.6135 | 51.5801 | 143.1706 | 43.5282 | | 6 | | 15 | 0 | '25.12월 |
| | 55형 (055.00000) | 55B | 확장 | 55.9700 | 25.0649 | 10.6211 | 51.6170 | 143.2730 | 43.5593 | 471 | 0 | 157 | 15 | 0 | |
| | | 55C | 확장 | 55.9800 | 25.0693 | 10.6231 | 51.6262 | 143.2986 | 43.5671 | | 3 | | 15 | 0 | |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46형 / 55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¹)로 표기하였습니다.(m¹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 및 가정어린이집(행복주택), 공공분양 기공급분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주택형 | 타입 | 층별 | 타입별 | 주택가격 | 계약금 (10%) | 1차 중도금 (10%) | 2차 중도금 (10%)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
| | | | | | 계약시 | ('24.10.24) | ('25.7.24) | 입곡 | 주시 |
| 046.0000O (46형) | 46A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53,650 | 35,365 | 35,365 | 35,365 | 192,555 | 55,000 |
| | 55A | 2층 | 기본형 | 415,310 | 41,531 | 41,531 | 41,531 | 235,717 | 55,000 |
| 055.0000O | | 3층 | 기본형 | 419,570 | 41,957 | 41,957 | 41,957 | 238,699 | 55,000 |
| (55형)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425,960 | 42,596 | 42,596 | 42,596 | 243,172 | 55,000 |
| | 55C | 5층~ 최상층 | 기본형 | 426,340 | 42,634 | 42,634 | 42,634 | 243,438 | 55,000 |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충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충·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충·호수를 기준으로 충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중도금(1차) 납기일은 '24.10.24일입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 ※ 부천원종 B2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형 모기지) 의무 가입단지로, 모기지 의무가입 세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 예정)
- ※ 단, 금회 공급 46형 세대는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선택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공급 46형 세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공급 46형 세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미가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 해약세대의 선택품목으로 시공되어 추가 설치 및 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셔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유무), 공간선택,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안내

[단위 : 천원]

| 주택형 | 타입 | 기본선택품목 | 동-호 | 추가선택품목 적용항목 | | 납부조건 | |
|-----------|------------------|-------------|----------|------------------------|--------|---|--------|
| T=18 | 다입 | (마이너스옵션 유무) | 8-호 | 구기전력품학 역용용학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거실 분리 | 무상 | - | - |
| 046.00000 | 46A | 기본형 | 207-1502 | 발코니확장 | 6,320 | 1,000 | 5,320 |
| 040.00000 | 40/1 | 158 | 207-1302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 5,000 | 500 | 4,500 |
| | | | | 합 계 | 11,320 | 1,500 | 9,820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 | - |
| | | 기본형 | 203-305 | 발코니확장 | 7,060 | 1,000 | 6,060 |
| | | | | 합 계 | 7,060 | 1,000 | 6,060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 | - |
| | | 기본형 | 203-505 | 발코니확장 | 7,060 | 1,000 | 6,060 |
| | | | | 합 계 | 7,060 | 1,000 | 6,060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 | - |
| | | 71 H 4N | 000 004 | 발코니확장 | 7,060 | 1,000 | 6,060 |
| | | 기본형 | 203-901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 6,400 | 640 | 5,760 |
| | | | | 합 계 | 13,460 | 제 계약금 무상320 1,000 .000 500 .320 1,500 무상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60 1,000 .050 550 .0560 1,550 .0560 1,550 .0560 1,550 .050 550 .050 550 .050 550 .050 1,550 .050 1,000 . | 11,820 |
| 055.0000O | 55A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 | - |
| | | 기본형 | 204-1202 | 발코니확장 | 7,060 | 1,000 | 6,060 |
| | | | | 합 계 | 7,060 | 함계 계약금 무상 | 6,060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 - |
| | | 71 14 44 | 200 004 | 발코니확장 | 7,060 | | 6,060 |
| | | 기본형 | 206-201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 5,500 | | 4,950 |
| | | | | 합 계 | 12,560 | | 11,010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 | - |
| | | -144 | 000 4400 | 발코니확장 | 7,060 | 1,000 | 6,060 |
| | | 기본형 | 206-1103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 5,500 | 550 | 4,950 |
| | | | | 합 계 | 12,560 | 州学音 | 11,010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 | - |
| | | -144 | | 발코니확장 | 6,920 | 1,000 | 5,920 |
| | | 기본형 | 202-501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 6,400 | 640 | 5,760 |
| | | | | 합 계 | 13,320 | 1,500 | 11,680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_ | _ |
| 055.0000O | 55.0000O 55C 기본형 | 기본형 | 202-901 | 발코니확장 | 6,920 | 1,000 | 5,920 |
| | | | | 합 계 | 6,920 | 1,000 | 5,920 |
| | | | | [공간선택-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 무상 | - | _ |
| | | -144 | | 발코니확장 | 6,920 | 1,000 | 5,920 |
| | | 기본형 | 208-604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 6,400 | 640 | 5,760 |
| | | | | 합 계 | 13,320 | 1,640 | 11,680 |

- 공간선택(무상) 안내 :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금회 공급세대는 모두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신혼화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화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의무가입 대상 : 본 주택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백만원)을 초과(금회공급 46형 세대 제외)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 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택가입 대상: 금회공급 46형 계약자는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백만원) 이하이므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Π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 (무주택 등)

1. 거주지역 제한

■ 금회 공급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4.07.04.)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 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 동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신혼회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mathbf{\Pi}$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금회공급 46형 세대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6월 18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형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금회공급 46형 세대 제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 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니다.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금회공급 46형 세대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동호추천

IV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타입별·동별·충별·충별·축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본 공고의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확인사항(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
|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
|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
| 3. 주택소유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mark>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3.1.2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mark>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 개정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하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 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반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인천 지역본부 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4.6.28(금) (10:00~17:00) | 인터넷 신청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일 (apply.lh.or.kr) 및 모바일일 | 1 |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 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4.6.28(금) 오후 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u>www.lh.or.kr</u>)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사전청약당첨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2024.6.28(금) 10:00~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4.07.04(목)
- 추첨 내용 :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회망타운(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추첨은 우리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신청(☎ : 032-566-181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참관신청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재당첨제한 적용)로 간주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당첨자) | | | |
|--------------------|-------------------|----------------------------|-------------------|--|--|
| 경험자 및 에미입구자 필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전자계약 | 현장계약 | | |
| '24.07.04(목) 16:00 | '24.07.18(목) | '24.08.22(목) | '24.08.23(금) |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10:00~16:00) | (10:00~16:00) | (10:00~16:00) | | |
| LF 성약들니다 및 포마탈립 | LH 부천원종B2블록 현장접수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LH 부천원종B2블록 현장접수처 | | |
| (apply.lh.or.kr) |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643) | (https://irts.molit.go.kr) |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643) | | |

| | 당첨자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본 공고의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에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인천지역본부 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4.07.18)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재당첨제한 적용)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6.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시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 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6.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서류 | 유형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발급기관 |
|-----------------------|----|-------------|--|------|
| (1)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수 | 본인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2)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필수 | 본인 |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 | | 해당자 |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압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반호 등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 | 필수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3)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해당자 | (예비)배우자,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필수 |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공고시에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작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LH 청약플러스 |
| (5)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필수 | 본인 |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주민센터 |
| | | 해당자 | 예비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
| (6)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수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 (7)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해당자 | 본인, (예비)배우자 | •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시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류로 임신진단서만 제출가능(임신확인서 제출불가)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해당 병원 |
| (8)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해당자 | 본인, (예비)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센터 |
| (9)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해당자 | 본인, (예비)배우자 | •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접수장소 |
| (10)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해당자 | 본인 | • 한부모기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주민센터 |
| (11) | 국내거소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 | (예비)배우자, 세대원 |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주민센터 |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6.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 계약서류 | | | | | | | |
|-----------------------------------|---|--|--|--|--|--|--|--|
|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 계약금 1,000천원 + 선 | 택사양품목 금액 10%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 | | | | |
| |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 |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 | | | | |
| 현장계약 |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 | | | | | | |
| |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제 | 기)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 | | | | | |
| 저지게아 |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 | | | | | | |
| 신사계약 |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 | | | | | | |
| 본인 외에는 |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 | 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 | | | |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 | | |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 | | | |
| |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 | | | | |
| | |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 | | | | |
| | ① 위임증 ※ 인: ② 당첨지 및 인? ③ 대리인 | 한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 계약금 1,000천원 + 선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하증, 여권 등) ※ 2020.12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자 전자계약 ②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인감증명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 | | | |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 | | | | | |
|---|----|---------|----|--------|--|--|--|
| 로그인 | - | 전자계약 체결 | 1 | 계약서 출력 | | | |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 | (공동인증서) | -/ | 및 보관 | | | |
| | | 계약자 | | | | | |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 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헌장여건에 따라 번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자후불제 대출안내]
- 중도금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공사가 대납하되, 공사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입주자가 입주 지정기간 중 입주 시 우리 공사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대납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중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액에 연체이자(현행 8.5%, 변동 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정 등 세부 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현행 8.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동시에 수융받을 수 없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21호)로 변경승인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2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조건이행, 지자체의견, 상위계획 반영,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에서 직선거리(부천원종 B-2BL 단지입구 기준) 1km이내에 서해선 원종역이 23년도 개통 예정이며, 공사 현황에 따라 개통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남측 구간에 봉오대로가 존재함에 따라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남측 구간에 상오정로 및 소사로가 존재함에 따라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북측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임에 따라 이로인해 지구 내·외부 여건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사업은 사업진행 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 원종지구 내에는 일반분양·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행복주택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원일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가 있으며,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사업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지구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부천원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구 내에 A-1BL,A-2BL,B-1BL 및 C-1BL 등이 인접해 있으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용지 및 도시계획 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로 본 단지와 인접한 도로 및 보도는 공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 구간에 방음벽 설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동·층의 조망 및 시야 등이 간섭받을 수 있음. 또한, 지구계획 변경 및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방음벽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당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착공되는 단지로, 지구내외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상 소공원1 내 제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의거 재해저감 시설인 영구 저류지 조성 예정임
-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북측 봉오대로 맞은편에 부천대장 지구 조성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공사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북측으로부터 약 1.5km 이격하여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북서측으로부터 약 3.5km 이격하여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굴포공공 하수처리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m로 계획되었음
- 본 단지는 부천원종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혼합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행복)별 구분 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분양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동별 일부라인 저층부는 동출입구 및 필로티 등으로 계획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동선, 시선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종합보육센터,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인접한 동 저층부 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조)
- 단지 내 환기탑(D·A)이 배치되어 소음 및 열풍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역, 피난 구역 확보를 위하여 각 동 전면, 후면 일부 구간은 조경 식재 등이 식재가 생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및 입주자 의견에 따라 외부에 위탁운영시설(국공립어린이집 등)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수요가 많을 경우 기존 어린이집 외에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 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 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됨
- (엘리베이터 사용 관련) 2세대가 1대 사용하는 라인 : 201,202,207,208동 1호2호, 3호4호, 5호6호라인

203,204,205동 1호 2호라인

3세대가 1대 사용하는 라인 : 203,204,205동의 3호,4호,5호라인

전체 3세대 1대 엘리베이터 사용 : 206동 1호,2호,3호라인(자세한 사항은 단지배치도 참조)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경면적 등의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백겨되 스 이용
- 단지 내 조경은 미확정 상태로 팜플렛의 단지조감도와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공용시설물, 도로계획 등 공용부분은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차은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710대이며, 22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별도로 3대(장애인 주차장 미포함)가 지상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민원에 의한 증설은 불가함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으며,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아파트 지하 PIT층 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실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아파트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 발전기 배기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에 의해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예정임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붕은 평지붕으로써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동에서는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뿜칠로 시공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일부 설치, 제공되는 시설물(어린이집-신발장,주방가구, 피트니스센터-신발장,데스크,락카장, 작은 도서관 내 도서 일부) 외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지원품목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우수 및 결로수 등 배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변압기 및 PAD 스위치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급속1대, 완속 35대가 설치될 예정임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발전기실 / 전기실, 208동 전면쪽에 위치)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당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됨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특정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는 동 옥상에, 중계기는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임(단,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8동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203,204,205동) 일부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각 세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을 통해 온수공급 및 난방이 이루어지는 개별난방임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부천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채광·환기창 은 전 층 설치되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번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이사 시 사다리차가 접근이 불가능한 세대가 있으므로 입주 전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지하 P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관리사항임
- 지하주차장의 환기탑 외부 마감은 석재뿜칠로 시공됨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및 강품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항상 등을 위해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난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1종 환기장치 등) 시공법은 하자방지, 시공성 제고 등의 사유로 위치 등이 번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을 요함(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급탕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는 내부공사시 점검구 설치 등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하여야하며, 부적절한 배기팬 설치할 경우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안내 및 확인서 징구 예정)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레인지후드는 공용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제품으로 입주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 세대 내 발코니1 바닥 및 천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부세대와 하부세대가 엇갈려 설치돼야 하므로 세대별 설치위치가 상이함.(최하층 세대는 천장에만 설치, 최상층 세대는 바닥에만 설치)(각 동의 1층 세대 및 208동 205호는 하향식 피난구 및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음)
- 하향식 피난을 위한 제품모델 및 디자인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세탁기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등)는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으며 화재 시 실외기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하여 외부로 대피해야 하므로 발코니1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1에는 철제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유형(공공분양, 행복주택) 및 지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장 뒷면과 주방가구 뒷면, 붙박이장, 신발장 뒷면 및 바닥, 천장은 마감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하부는 수성페인트로 마감됨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팸플릿, 주택홍보관 등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사항이며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석고보드 설치 공법 상 이음부위 테이핑 시공 시 일부구간 평활도가 고르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벽체 및 천장에 음영이 질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등 중량물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시공 시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칠 경우 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음
- 공간계획에 따라 혹은 시공 과정에서 현관, 발코니, E/V홀 등 공간별 바닥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거치공간이 발코니1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정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각 실 및 욕실 등에 설치되는 환기구 및 환기장치, SP헤드, 박스류(수전함 등)의 설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부속품은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되나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AL창호, 조명기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대상 품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거실, 욕실, 주방 등)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 시 단지배치도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유니트 및 덕트,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환기용유니트,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번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옵션 선택시 해당 없음)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부욕실 내 레인형 샤워기 샤워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 질 수 있으며,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음
- 단위세대 전기설계부하용량은 55㎡형 4.650VA임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빨래자동건조대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세대의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세대 내 통신단자항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알파룩 변체에 매인설치 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46A형의 세대분전반은 침실2 변체에 설치된)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함
- 빨래자동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자동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됨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통화서비스(욕실비상콜:주거약자에 한함),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여동)를 제공한
- 본 단지의 AI 스피커 서비스는 SK, KT, LGU+ 중 입주자가 선택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홈 IoT" 앱을 통하여 이용가능함(스마트폰 앱은 통신사 무관)
- AI 스피커(입주자가 선택한 사업자의 기본사양 장비) 사용 시 음성 제어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타사 AI 스피커 이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서비스 종료기간 후에는 스마트홈 사업자의 요금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 제공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 해지됨)
- AI 아파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SK, KT, LGU+ 이동통신 3사 중 스마트홈 사업자를 선택하고 입주 시 입주자가 선택한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상품 개선, 스마트홈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무상사용 제공 기간 내라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LH 및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청구할 수 없음
- AI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IoT 가전 연동을 위하여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세대 내 인터넷 및 WiFi는 통신사와 무관하며, 입주자가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고 입주자 부담사항임)
- IoT 가전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일부 서비스는 각 스마트홈 사업자의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됨
- TV/뮤직/인터넷전화 등 일부 서비스는 별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됨

■ 학교 및 교육시설

| 학교 | 위치 | 학교명 | 비고 |
|------|------------------|--------------|----|
| 유치원 | 부천시 소사로 819번길 46 | 원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초등학교 | 부천시 소사로 819번길 46 | 원일초등학교 | |
| 초등학교 | 부천시 성오로 160 | 대명초등학교 | |
| 고등학교 | 부천시 소사로 807번길 68 | 원종고등학교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 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의(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의 주택전시관 및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모형 또는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설계획, 내부구조 및 마감 등은 향후 사업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 성능부문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1. 소음관련 등급 |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 | 2.1 내구성 | * |
| | 2.2 가변성 | ** |
| 2. 구조관련 등급 |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 | 3.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해당없음 |
| | 3.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해당없음 |
| | 3.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해당없음 |
| | | , |
| | 3.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 3.5 에너지 성능 | ** |
| | 3.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 3.7 신·재생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 | 3.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해당없음 |
| | 3.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 |
| 3. 환경관련 등급 | 3.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 | 3.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 3.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 3.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 3.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 3.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 3.16 빗물관리 | 해당없음 |
| | 3.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해당없음 |
| | 3.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 3.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 3.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해당없음 |
| | 3.21 자연지반 녹지율 | * |
| | 3.22 생태면적률 | * |
| | 3.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해당없음 |
| | 3.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 3.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 3.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 3.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 | 4.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 4.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 4.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 4.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 4.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 4.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 4.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4. 생활환경 등급 | 4.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 4.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 4.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 4.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 4.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 4.12 세네 네 글도 속도달 | |
| | 4.13 옵네트워크 용압시스템 4.14 방범안전 콘텐츠 | *** |
| | | |
| | 5.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 5.2 제연 설비 | * |
| 화재 · 소방관련 등급 | 5.3 내화 성능 | * |
| | 5.4 수평피난거리 | *** |
| | │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구 분 | 적용 여부 |
|---------|-------|
| 측벽 | 적 용 |
| 외벽(직접면) | 적 용 |



| 외벽(간접면) | 적 용 |
|----------|-----|
| 창호(직접면) | 적 용 |
| 창호(간접면) | 적 용 |
| 지붕 | 적 용 |
| 바닥(직접면) | 적 용 |
| 바닥(간접면) | 적 용 |
| 바닥(층간바닥) | 적 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 고효율LED | 적 용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절수설비 | 적 용 |
| 고효율설비 | 적 용 |
| | |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천원)

| 구 분 | | | | 총 액 | | |
|-----|-----|----------|--------------|-----------|--|--|
| | | | 택지공급가격 | 74,224,2 | | |
| | | | 기간이자 | 5,062,27 | | |
| 택지비 | | | 필요적 경비 | 75,8 | | |
| | | | 그 밖의 비용 | 2,890,42 | | |
| | | | 계 | 82,252,82 | | |
| | | | 토공사 | 1,298,00 | | |
| | | | 흙막이공사 | | | |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 | | 옹벽공사 | | | |
| | | | 석축공사 | 49,9 | | |
| | | | 우·오수공사 | 317,2 | | |
| | | | 공동구공사 | | | |
| | | 토목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9,6 | | |
| | | | 도로포장공사 | 119,2 | | |
| | | |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12,9 | | |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 | | | 조경공사 | 2,981,0 | | |
| | | | 부대시설공사 | 126,4 | | |
| | | | Л | 4,914,7 | | |
| | 공사비 | | 공통가설공사 | 1,137,3 | | |
| | | | 가시설물공사 | 2,258,6 | | |
| | | | 지정 및 기초공사 | 791, | | |
| | | | 철골공사 | | | |
| | | | 철근콘크리트 공사 | 13,905, | | |
| | | | 용접공사 | | | |
| | | | 조적공사 | 1,157, | | |
| | | | 미장공사 | 1,701, | | |
| 건축비 | | | 단열공사 | 2,077, | | |
| | | | 방수·방습공사 | 1,538, | | |
| | | | 목공사 | 2,091, | | |
| | | 건축 | 가구공사 | 391,: | | |
| | | 27 | 금속공사 | 431, | | |
| | | | 지붕 및 홈통공사 | 335, | | |
| | | 창호공사 | 2,632, | | | |
| | | | 유리공사 | 615, | | |
| | | | 타일공사 | 1,142, | | |
| | | | 돌공사 | 345, | | |
| | | | 도장공사 | 1,087, | | |
| | | | 도배공사 | 406, | | |
| | | | 수장공사 | 658, | | |
| | | | 주방용구공사 | | | |
| | | 잡공사 | 472,2 | | | |
| | | | 계 | 35,177,0 | | |
| | | | 급수설비공사 | 912,8 | | |
| | | | 급탕설비공사 | 188,4 | | |
| | | <u> </u> | 오배수설비공사 | 3,530,8 | | |
| | | 기계설비 | 위생기구설비공사 | 1,543,8 | | |
| | | | 난방설비공사 | 1,486,4 | | |
| | | | 가스설비공사 | 605,6 | | |
|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4 | | |

| | | 특수설비공사 | 53,117 |
|-----|----------|-----------------------------|-------------|
| | | 공조설비공사 | 258,946 |
| | | 계 | 8,580,673 |
| | | 전기설비공사 | 4,766,723 |
| | | 정보통신공사 | 2,555,017 |
| | 그 밖의 공종 | 소방설비공사 | 4,475,769 |
| | | 승강기공사 | 1,389,900 |
| | | 계 | 13,187,409 |
| | | 일반관리비 | 2,138,320 |
| | 그 밖의 공사비 | 이윤 | 3,625,104 |
| | | 계 | 5,763,424 |
| | | 설계비 | 1,150,232 |
| | | 감리비 | 438,184 |
| | | 일반분양시설 경비 | 994,056 |
| 간 | 접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132,185 |
| | | 보상비 | -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2,077,978 |
| | | 계 | 4,792,635 |
| 그 밖 | 의 비용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6,596,047 |
| | | 합계 | 161,264,782 |

[※] 분양가격 공시내역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 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 가.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나. 대교감정평가법인 |
|---------------|--------------|--------------|
| 86,475,719천원 | 86,973,659천원 | 85,977,778천원 |

[단위 : 천원]

| | | 택지비 | 가산비 | | | | | 건축비가산비 | | | | | | |
|----|-----------|-----------|-----------|---------|-----------|-----------------------|-----------|-----------------|----------------|--------------|----------------|----------------------|-------------|-----------|
| 항목 | | 기간 | 흙막이 | | | 법정초과 | 공동주택 | 인텔 | 리전트 설치 | 비용 | 친환경 |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 지하 | 사업승인 |
| 07 | Л | 이차 | 공사비 | 기타 비용 | 계 | 복리시설 성능등급 설치비용 가산비 | 흠 네트워크 | 에어컨 냉매 배관 | 기계 환기 설비 | 주택건설 추가비용 |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 주차장 층고증가 추가비용 | 부가조건 가산비 | |
| 금액 | 9,353,778 | 5,897,858 | 2,541,661 | 914,260 | 7,684,793 | 1,437,106 | 607,507 | 2,054,002 | 278,214 | 497,613 | 1,013,376 | 28,860 | 173,518 | 1,594,596 |

[※] 택지비 및 가산비 산출내역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 부천원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SGC이테크건설 | (고시이해보조나크 데케)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310-81-31079) 외 4개사 | |
| B2블록 | (131-82-13727) | (214-81-89369) 외 3개사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감리비용(8,515백만원) | |

10.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LH 부천원종 B2블록 현장 접수처

■ 위치안내: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주택홍보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 **운영기간** :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내부사정 등에 따라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운영시간: 10:00~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 문의

■ 주 소 : [PC·모바일] www.bcb2.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 LH 부천원종 B2블록 현장접수처 : 032-566-1810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인 천 지 역 본 부